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0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이정문

정태호 • 손명수 • 김태선

전진숙 • 이춘석 • 정을호

김주영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 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행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제5호의4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제5호의4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신규 모집 중지

- 2.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 면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제50조(금지행위) ①
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4.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
	해사고 발생 행위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제50조제1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	(제5호의4는 제외한다)
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 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11. (생 략) <신 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11.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
1항제5호의4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신규 모집 중지
2.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
<u>③</u> <u>제1항 및</u>
제2항
<u>.</u>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조치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정해 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④</u> 제1항 및
제2항
<u>⑤</u>
<u>제4항</u>
<u>제1항 및 제2항</u>
<u>제1영 및 제2영</u> <u>제3항</u>
<u> </u>
<u>.</u>
· <u>⑦ 제6항</u>
<u> </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⑦</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u>
<u>제5항</u> 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제6항
에게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하	
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